



: 2021-02-09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

판 결

사 건 2020나2010198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로
담당변호사 정원균
피고, 피항소인 1. B
2. 우크라이나국인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룡
제1심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8가합27496 판결
변론종결 2020. 7. 7.
판결선고 2020. 9. 3.

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82,660,8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제3자 채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과 관련하여, 제1심판결 제4쪽 4행의 "위와 같은 배임행위로 인하여"를 "위와 같은 배임행위 내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로, 제4쪽 하2행의 "배임행위를 하였다고"를 "배임행위 내지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고"로 각 고쳐 쓰고,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과 F의 거래 및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와 G의 거래에 있어 독점적인 중간거래업자 또는 조정자(coordinator) 지위에 있는데, 피고들은 이를 잘 알면서도 위 거래처들에 접근하여 원고와의 거래를 중단하고 E와 거래하도록 함으로써 원고의 위 거래처들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였는바, 피고들은 이러한 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피고들은 원고의 위 주장이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항소심 제1회 변론기



일이 진행되기 전에 위 주장을 하고 관련 증거들을 제출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단

1) 제3자의 행위가 채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그 제3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법규를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때 그 행위가 위법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되는 채권의 내용, 침해행위의 태양, 침해자의 고의 내지 해의의 유무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되, 거래자유 보장의 필요성, 경제·사회 정책적 요인을 포함한 공공의 이익, 당사자 사이의 이익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944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독립한 경제주체 사이의 경쟁적 계약관계에 있어서는 단순히 제3자가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계약 내용을 알면서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위반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제3자의 고의·과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제3자가 채무자와 적극 공모하였다거나 또는 제3자가 기망·협박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수단을 사용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채무자와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3자의 고의·과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5. 8. 선고 99다38699 판결 등 참조).

2) 갑 제11, 17, 41, 4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국내 제조사 I과 동유럽권 유통업체인 F 사이의 독점유통계약체결 및 국내 제조사 J와 동유럽권 유통업체 G 사이의 독점유통계약체결에 있어 원고 회사가 양 회사 간의 거래 조정자(coordinator) 지위를 독점하기로 약정한 사실¹⁾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B이 퇴사 직후 E를 운영하면서 피고



C와 함께 원고 회사와 유사한 형태의 영업을 하면서 피고 C는 F와 G 담당자에게 E에서 일하게 되었음을 알리고, 피고 B은 I과 J의 담당자에게 F와 G가 E와 함께 하기로 하였음을 알리면서 E와의 거래 협의를 제안한 사실, 그에 따라 F 및 I, G 및 J가 원고 회사와의 거래를 중단하고 E와 거래를 시작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을 제1, 4 내지 11, 15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위 인정사실과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들의 위와 같은 영업행위가 위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들이 채권침해를 구성할 어떠한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고들은 원고 회사에서 퇴사하거나 원고 회사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위 각 거래처 담당자들에게 E와 거래할 것을 요청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 피고들이 위 각 거래처로 하여금 원고와의 거래를 중단하고 E와 거래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망, 협박 등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들이 원고 회사의 자료를 부당하게 반출하여 이용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은 이미 살펴본 바 있다. E가 위 각 거래처에 선수금을 지급하거나 위 각 거래처로부터 원고 회사가 받았던 수수료보다 적은 금액을 받기로 하는 등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기로 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로 볼 수 없고, 달리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② 피고들은 원고 회사와 원고 회사의 거래처에 대한 영업활동을 금지하는 영업금지

1) 각 독점유통계약서 제2조는 'Party C(원고 회사) has exclusive role and right of coordinator between Party A(I 또는 J) and Party B(F('K'로 상호 변경) 또는 G)'라고 정하고 있다.



내지 전직금지 약정을 따로 체결하지 않았다.

③ 피고 B은 원고 회사를 퇴사하면서 원고 회사의 업무용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던 거래처 자료, 제품소개, 견적서, 회사 소개서, 거래관련 번역자료 등 회사업무 관련된 문서를 임의로 삭제하였고 그로 인해 재물손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하였으나, 위 행위 자체가 원고 회사의 업무처리에 지장을 주어 피해를 입혔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행위를 E를 위한 영업활동과 연관지어 원고 회사를 해할 의사로 위 각 거래처로 하여금 원고 회사와의 거래를 중단하게 한 것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④ F, G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가 E로 입사했다는 말을 듣고 E와 거래하기를 원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계기로 F, G는 원고 회사의 미흡한 업무능력을 이유로 협력 관계를 종료한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고 있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업무능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에도 위와 같은 허위 사유를 들어 협력 관계 종료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들이 위 회사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허위 사유를 들어 원고 회사와의 협력 관계를 종료하도록 종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I과 J는 제품 수요자인 F, G의 의사에 따라 중간거래업자 또는 조정자를 원고 회사에서 E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2021-02-09

재판장 판사 홍승면

 판사 박지연

 판사 김선아